

상용조례(안)에서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는 공공시설물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료로 사용토록 할수도 없고 사용자에게 선량한 관리 의무를 주기 위하여, 또한 공공시설물을 보존관리 하기 위함.

문) 노동복지회관 관리를 근로자가 직접적으로 참여가-가능한지?

답) 노동복지회관은 부천시 공유재산이며 또한 중요행정 재산입니다.

공공재산의 보존관리 책임은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하여 공무원이 직접 관리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

문) 독서실 장소에 노동전문서적이나 교양서적을 배치하는지?

답) 부천시 노동복지회관에는 도서실이 아니고 근로자가 책을 읽고 싶은 사람이 있는 경우 독서를 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추후 근로자들이 필요한 서적이 무엇인지를 검토하여 전문서적, 교양서적을 확보할 계획임.

문) 식당 및 예식장을 직접운영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면 어떠한지?

답) 현행 법규상 공무원이 직접 할 수 없는 사업이 있습니다.

예식장은 관리 인원을 충원 배치하여 직영을 하므로 사용자가 부담없이 사용토록 하겠으며, 구내식당은 위탁을 할 경우 계약서 질, 가격등 조건을 붙여 공개입찰하여 이용자에게 실익이 되도록 하겠음.

문) 노동복지회관 조례 제8조 4항의 내용중 제세 광과금을 제외한 30/100을 사용료 납입에 대한 기준은?

답) 노동복지회관의 사용료(대관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사용신청을 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한 공연, 행사등을 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부천시 공유 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에 근거를 하여 수입금(입장, 관람료)중 제세공과금을 제외하고 30/100을 시에 납부토록 한 것임.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의원명	주요요지
서병만	탁아소의 필요성은 느끼고 있으나 기존설치된 노동복지회관 휴게실을 이용하는 것은 회관건립 취지에 어긋남.
임근규	준공을 앞두고 있는 건물을 용도변경하여 기존의 목적의 기능을 상실할 수 있고 운영상의 인력문제 및 기타 부수적인 문제가 수반되어야 할 사항으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반대함.

나. 반대토론

의원명	주요요지
	없 음

5. 수정안의 요지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없 음

나. 수정이유

없 음

다. 수정주요골자

없 음

6. 조사결과

원안대로 의견

7. 소수의견의 요지

○ 탁아소의 필요성은 공감대를 형성하나 휴게실을 이용하는 것은 공간의 부족과 기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므로 심사숙고 하여야함.

8. 기타필요한 사항

○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도있는 사항을 위하여 차기 임시회에서라도 심층있는 논의가 있어야 하겠음.

9. 체계자구심사내용

없 음

부천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안심사보고서

1991. 5. 3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1. 심사결과

가. 제안일자: '91. 5. 30.

나. 제안자: 부천시장

다. 회부일자: 1991년 5월 28일 회부

라. 상정일자: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상정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시정과장 이 완 기)

가. 제안이유

1991.1.1.호적법중 개정법률('90.12.31. 법률 제 4298호) 시행으로 종전 호적법시행령(대통령령)에 근거를 두고 시행중인 부천시 호적과태료 부과징수조례를 호적법시행령이 폐지됨에 따라 호적법시행규칙(대법원규칙)에 근거하여 동 조례의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

나. 주요골자

- 부과대상(안 제3조)
- 부과기준 및 면제(안 제4조)
- 채납처분(안 제8조)

3. 질의 및 답변요지

문) '90년 '91년 출생신고 진수와 과태료 징수현황?

답) 별첨

문) 본조례 개정안이 타시군에서 조례개정원안대로 통과된 시군이 있는지?

답) 수원, 성남, 구리, 시흥, 동두천, 의왕, 안성군, 화성군

문) 호적법 제130조 및 제131조 최초 적용시점은?

답) 1962년 12월 29일 법률 제1238호

문) 본조례 개정안 제4조(부과기준 및 면제) 2항 3의 "구청장은 과태료를 면제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다"의 구체적 사례 내용이 있는지?

답) 별첨

문) 제4조(부과기준 및 면제) 5항중 신고의무자의 해태 기간, 학력, 생활정도, 해태이유, 해태지역등 5가지 항목만 되어있는데 더 추가 항목이 없는지?

답) 과태료 부과기준 별표2의 내용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더 이상 추가하지 않아도 충분하다고 생각함.

문) 본 조례가 대법원 규칙에서 정해진 상한선의 과태료가 위배되지 않고 반드시 준책대로 하지 않아도 되는지?

답) 호적법 130조, 131조에 5만원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상한선으로 하고 해태기간이 1년미만 민원인에 한해 부과율을 변동해도 되나 타 시군과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내부부(안)이 타당함.

문) 부천시와 타 시군간에 과태료의 금액차이가 있을 때 주민들의 민원의 대상이 될 소지는?

답) 타 시군보다 월등하게 높게 과태료를 책정 부과하거나 낮게 부과할 시에는 민원담당 공무원과 민원인과의 민원의 대상 소지가 있음.

문) 본인의 해태 하였을 경우 해태사유 자진 신고 절차와 납부절차는 어떠한고 본인의 해태 사유 신고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 부과를 하는지?

답) 출생신고와 동시 해태사유서가 발생하기 때문에 자진신고가 되고 있으며 납부절차는 신고와 동시 해태 사유서를 작성하여 민원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면 민원담당 공무원은 납기기간을 14일간 주고 납부 통지서를 교부하여 납부토록 하여 본인의 해태사유신고는 해태기간, 해태지역, 해태사유, 학력, 생활정도로 부과됨으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음.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의원명	주요요지
정월남 임근규	물가상승률을 보아 원안대로 통과 준법정신 차원에서 시민에게 큰 부담이 없다고 생각되므로 원안대로 통과가 타당함.

나. 반대토론

의원명	주요요지
김옥현	인상물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조정 물가상승과 병행하여 주민에게 주는 부담인만큼 올리지 않은 것이 타당함.
장문식	일시에 주민에게 주는 경제적 부담감이 있고 홍보기간과 인식할 수 있는 기간 충분히 두어 기습인상으로 인한 시민의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시민의 경제적 부담이 있음

5. 수정안의 요지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없음

나. 수정이유

없음

다. 수정주요골자

없음

6.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

7. 소수의견의 요지

과태료라는 것은 행정 행위에 대한 주민 부담으로서 충분한 사전기간을 설정하여 반상회 및 기타

홍보 사항을 통한 주민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바람.

8. 기타필요한 사항

없 음

9. 체계지구심사내용

없 음

호적과태료원법건수 및 과태료징수현황

건수/천원

원법	1990년		1991년		비고
	건 수	과태료세액	건 수	과태료세액	
계	16,109	2,455/30,998	5,684	698/15,484	
1월	1,174	161/2,185	1,275	117/2,595	
2월	1,431	180/2,371	1,840	187/4,300	
3월	1,707	242/3,089	1,706	214/4,757	
4월	1,245	266/3,285	863	180/3,832	
5월	1,461	237/2,913			
6월	1,189	169/2,244			
7월	1,255	168/2,322			
8월	1,509	207/2,848			
9월	1,151	242/2,245			
10월	1,480	198/2,397			
11월	1,199	203/2,726			
12월	1,308	182/2,373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개정조례(안)

제4조(부과기준 및 면제) 2항 3 기타 구청장은 과태료를 면제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자

1) 구청장이 서류 검토 후 민원인으로서의 성실의무를 행하였으나, 행정착오등으로 인하여 해태되었을 때

예) 출생신고를 30일 이전에 동에 신고를 하였을 경우 동에서 본적지에 통보하였을 때 본적지에서 본판이나 글자 한 획이 틀렸을 때는 주소지로 반송하며 주소지(동사무소)에서 민원인에게 연락을 하였을 때 장기출타나 연락의 지연등으로 1개월이 경과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부천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1991. 5. 3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91. 5. 28.

나. 제안자: 부천시장

다. 회부일자: 1991년 5월 28일 회부

라. 상정일자: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1991.5.29)상정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1991.5.30)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공업과장, 환경보호과장, 도시과장)

가. 제안이유

(환경보호과 소관)

- 날로 급증하고 있는 일반폐기물(쓰레기, 분뇨)의 효율적인 처리를 도모하고
-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시민편의 증진을 위하여
- 청소업무 위임으로 청소행정의 능률 증진을 위함.

(공업과 소관)

- 공장설립(허가 및 등록)에 관한 공업배치법(구법)이 '91.1.13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신법)로 개정되었으며
- 구법에 의하여 공장설립 완료보고는 시장이, 공장등록업무는 구청장(위임업무)이 처리하므로써 행정처리가 이원화 되어있었으나 신법에서는 위의 2가지 민원 처리를 동일 기관장이 처리하도록 규정(신법 제16조)하고 있음에 따라
- 공장의 등록권한은 현재 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으나 공장의 등록 취소권한은 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지않아, 공장의 등록(신법 제16조)과 공장의 등록취소권한(신법 제17조)을 일치시켜 행정처리의 합리성과 합법성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환경보호과 소관)

- 청소업무중 다음사항을 구청장에게 권한위임
 - 일반폐기물 처리 방법의 개선 및 주민지도
 - 공중변소 및 공중용 쓰레기용기 설치관리
 - 쓰레기 자체수집 운반 처리자 지정
 - 축산폐수 정화시설 설치신고 수리 및 준공검사
 - 분뇨 정화조, 오수 정화시설 또는 축산